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주요 내용의 법률 상향 등〉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련 세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비교공시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에 수익률을 추가하고(안 제32조), 현행법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금융상품 <u>비교공시</u> 등)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금융상품 <u>비교공시</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수익률 5.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범위,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u>표할 수 있다.</u> <u>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를 통하여 금융소비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 다)을 정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 의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 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 32조제1항),¹⁾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1) 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비교공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비교공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비교공시 내용에 ‘수익률’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2조제2항제4호).

[현행법률 및 시행령과 개정안 주요 내용 변화 비교]

현행법률 및 시행령	개 정 안
법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영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 2. 보험료 3. 수수료 / 4. 수익률 5.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익률을 포함하여 비교공시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비교 공시 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투자의 주요 판단 지표로서 수익률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보다 합리적 투자·선택이 가능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²⁾가 비교공시하는 내용에 수익률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0조³⁾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각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을 비교공시⁵⁾하고 있으며, 연금저축계좌⁶⁾와 퇴직연금제도⁷⁾는 금융감

2)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비교공시 업무를 위탁 중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단서 생략)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3) 「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5)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펀드공시 항목

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4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4.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나. 수익률

7)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7조(비교공시) ①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

독원 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익률을 비교공시⁸⁾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 시행세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상향하여 입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상품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비교공시 대상항목을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해석·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자율은 예금성·대출성 상품에만 적용이 가능한 등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에 따라 비교공시 대상 항목이 상이하 여 현재에도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을 통해 비교공시 사항을 구체화 중이며, 주요 비교공시 관련 범위와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경우 금융시장 및 공시 수요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손해보험협회는 보장성 상품은 구조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공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한 자료 제출 요청권 등(안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법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항(안 제32조의2)으로 분

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

8)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리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내용상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